

3. 「地方財政危機管理法(案)」의 內容 및 改善 方向

- (背景) 內務部는 地自體가 財政的 危機를 맞을 경우를 對備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동 법안을 제안함
- (內容) 재정운용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정적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는 財政管理人을 파견하여 재정 정상화를 도모함
- (問題點) 재정상태를 판단할 客觀的 指標가 없고,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간에 破産 責任 攻防 및 政治的 對立 가능성이 있음
- (效果) 동 법안이 시행되면 地域開發事業이 萎縮되는 대신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신중해질 것임
- (改善方向) 내무부의 起債承認權 등을 없애으로써 지자체의 財政運用 自律性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인의 파견시에는 地自體 議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

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한 법적 장치로 지자체 견제 목적도 있음

- (背景) 地方財政危機管理法은 地自體의 財政的 危機에 對備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임
 - 불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놓이는 것을 事前的으로 막고
 - 지자체가 파산상태에 이를 경우 中央政府가 主導的으로 나서서 解決하기 위한 法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임
 - 내무부는 동 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려함
 - 유사한 법안이 미국과 프랑스 등에 있지만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음
 - 中央政府가 지자체 실시 후 홀로서기를 시도할 地方自治團體를 牽制하려는 목적도 있음

재정운용평가위원회 설치하여 지자체의 재정정상화 도모

- (主要 內容) 주요 내용은 財政運營評價委員會의 설치와 財政管理人의 파견임
 - 내무부가 파산 직전의 지자체를 財政運營評價委員會에 통보하면 동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정상화를 시도함
 - 재정상태의 판단은 내무부가 개발할 재정지표를 기준

으로 함

- 위원회는 財政專門家, 중앙부처 및 지자체 公務員등 10 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자체에 特別財政診斷을 실시한 후 재정 정상화 방안을 수립함
- 위원회가 財政管理人 파견을 결정할 경우 재정관리인은 해당 지자체장의 역할을 대신함

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알려줄 객관적 지표 개발이 과제

지자체 파산의 책임은 중앙정부에도 있음

파산위험성의 감소와 지역개발사업의 위축

- (問題點) 재정상태를 판단할 指標의 客觀性, 지자체 破産의 責任 攻防, 政治的 對立 등의 문제가 있음
 -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재정지표의 개발이 쉽지 않음
 - 내무부는 한국지방행정위원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재정운용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중이나 객관적 지표를 찾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임
 -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어 지자체 破産(財政危機)의 責任所在가 不分明함
 - 파산의 주 원인이 되는 地方債는 내무부의 승인없이 발행할 수 없음
 - 財政自立度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운용의 방만함과 관계없이 파산할 수도 있음
 -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단체장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파산 선고가 심각한 政治的 對立을 야기할 수 있음
 - 동 법안에는 재정관리인이 단체장을 대신하는 데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어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음
 - 政治的으로 惡用될 가능성도 많아 국회에 상정될 경우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 것임
 - 집권당이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 동 법안을 偏頗的으로 適用할 가능성도 있음
- (效果) 지자체의 파산 위험성은 감소하는 대신 地域開發事業이 萎縮될 것임
 - 동 법안이 제정되면 단체장의 財政運用이 상당히 制約될

것임

- 단체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地域開發事業, 특히 지역 SOC사업이 위축됨
- 반면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자체가 파산위기에 놓이는 경우는 감소할 것임
-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활동이 저조한 市·郡의 破産 可能性이 높음
- 동 법안으로 낙후 지역의 지역개발이 위축되면 지역간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

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파산선고에 대한 주민의 승인이 있어야

- (改善方向) 지자체 財政運營의 自律性을 제고하고 住民의 同意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여야 함
- 지자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
 - 지방정부에 地方稅 立法權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수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
 - 미·일 등 외국에 없는 내부부의 지자체 起債承認權을 폐지하여야 함
 -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, 지방양여금, 국고보조제도를 개관적,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함
- 地方議會 등을 통한 破産 承認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
 - 지자체의 財政診斷은 上級政府가 하고 破産 與否는 해당 지자체의 地方議會, 또는 住民投票로 결정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드는 주민투표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파산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

< 지역별 재정자립도 >

지역	서울	광역시	도	시	군	자치구
재정자립도(%)	98.2	81.6	46.8	63.6	24.5	53.2

주 : 일반회계 기준
 자료: 재무부, 『지방재정연감』, 1994

(박 기 백)